2023년도 제12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목 차

제1장	응시원서 작성	3
제2장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5
제3장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6
제4장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7
제5장	자격증 교부 신청	8

1장 응시원서 작성

① 응시원서 작성

1. 접수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접수 기간 : 시작의 09:00부터 ~ 마감의 18:00까지(마감일 18:00 이전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 * 국시원에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 근무시간(평일 09:30~18:00) 중에 국시원에 방문하면 민원 PC에서 인터넷 접수할 수 있음.

② 응시원서 작성 순서

1.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면허신청 등에 사용
- 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 / 전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
- ※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주소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2. 응시원서 작성

- 시험선택 :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 사용. 금융 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코리아크레딧 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3. 응시원서 접수 내용에 대한 서약

본인은 위에 기재·표시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응시자격 조회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아도 이를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4. 응시수수료 결제 <제7장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참고>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감면 자격확인] 중 선택하여 진행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5. 접수결과 확인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https://www.easypay.co.kr [결제내역조회]에서 열람·출력

6.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중앙 [응시원서 수정]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험시행 하루 전 :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7. 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중앙 [응시표 출력]

■ 기간 : 직종별 별도 출력일* 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시행계획공고 중 시험장 선택제 관련 별첨자료 참고)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2장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사진 등록

- 원서접수용 공통 규격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 응시원서 사진 변경 : 접수기간 종료 후 시험일 10일전 까지 가능. 응시 직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기재 및 사진 첨부 후 photo1@kuksiwon.or.kr 앞으로 메일 발송하여 변경 가능함.(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산정보부 사진변경 담당자 수신여부 확인 요망)
 - ※ 자격증 사진 변경: 자격증 교부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변경 가능
 - ① 변경 사진
 - ②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③ 신분증 사본
 - 스캔 : [PG file(컬러), 3.5 × 4.5 cm 크기(276 × 354픽셀 이상), 해상도 최소 200 dpi 이상(600 dpi 이상 권장)

3장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결제 안내

- 결제 방법 :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간편결제, 감면 자격확인
- 마감 시간 : 인터넷 접수 마감잌 18:00까지
- 기 타 : 타인 명의 계좌·카드 결제 가능, 결제수단 선택 후 변경 불가

1. 온라인 계좌 이체

- 가. 방식 : 입력한 은행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 출금되는 방식 (단, 계좌의 잔고가 응시수수료보다 더 많아야 함)
- 나. 이용가능 금융기관
- : 상세 이용가능한 은행 및 서비스 가능 시간은 결제창 내의 [은행상태 확인] 을 통해 확인 가능
- ※ 계좌이체 이용가능 시간은 각 은행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 ※ 산업, 수협, 신협, 우체국 등은 법인명의 계좌에서 이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다.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됨)
- 라. 기타사항 : 타인명의 계좌 결제 가능

2. 신용카드 결제

- 가. 방식 : 국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 나. 이용가능 카드 : 국내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단, 직불카드, 직불카드 겸용 체크카드, 해외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 카드는 사용 불가)
- 다.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됨)
- 라. 기타사항 : 타인명의 카드 결제 가능

3. 가상계좌 이체

- 가. 방식 : 결제 은행 선택 후 가상계좌가 생성되어 수신된 가상계좌번호에 응시수수료를 입금(이체)
- 나. 이용가능 금융기관
- : 상세 이용가능한 은행 및 서비스 가능 시간은 결제창 내의 [은행상태 확인] 을 통해 확인 가능
- * 가상계좌 이용가능 시간은 각 은행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 다. 입금방법 : 인터넷 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은행창구 방문(영업시간 내))
- 무통장 입금 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사용불가
- 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입금하실 은행의 계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음
- 라.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됨)
- <u>가상계좌 이체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해당 결제수단은 **접수 마감시간(마감일**</u> 18:00) 1시간 전까지만 결제수단으로 선택 가능
- 본인이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타인이 대리로 입금하여도 관계없음
-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
- 가상계좌 안내 SMS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응시원서 선택]에서 가상계좌번호 확인 가능

4. 간편결제

- 가. 방식 :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에 미리 등록해 지문인식이나 비밀 번호 입력만으로 결제
- 나. 이용가능 수단 : 상세 이용가능한 수단 결제창에서 확인 가능
- 다.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됨)
- 5. 감면 자격확인(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 가. 방식 :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감면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 나.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법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 유의사항
- <u>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결제(감면자격확인)를 완료해야 원서</u> 접수 완료됨)
- 라. 기타사항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가능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
- ※ 단, 결제기관별로 이용가능 시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특히 결제 마감시간에 결제기관의 서비스 점검 또는 장애로 인한 접수누락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장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①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2023. 7. 현재기준)

- 가. 관련근거: 우리원 제증명서 발급·열람 및 응시수수료 관리 지침 제9조
- 나. 환불요율
 - 개인사정으로 인한 응시취소

구분	환불요율
• 접수마감일 후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 '기타 응시수수료의 100%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100% 환불기간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 기타 사유로 인한 응시취소

사유	환불요율	신청기한	제출서류	
•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입영통지서	
• 본인, 형제, 자매, 자녀가 시험일에 결혼하는 경우	는, 전염성이 리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를 준용함 네 응시하지	시험일후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 진단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 (시험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류	
•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가족의 사망 *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를 준용함		30일까지	(재적사실 포함), 사망진단서(필요시)	
• 천재지변 또는 국시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하지		개별안내
• 이 외에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국시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안내	

- ※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한 자는 환불 불가함
- ※ 환불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 까지로 한다.
- ※ 국시원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국시원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 가.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하여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
- 나.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신청
- : ①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 본인) ④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다. 유의사항: 환불신청 후 재접수 불가
 - ** 국시원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취소 신청내역]을 통해 응시취소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인터넷 환불신청자에 한함)
 - ** 기타 사유로 인한 응시취소 시,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문의 후 신청 바랍니다.

③ 화불 신청 기한

■ 인터넷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까지 인정

■ 방문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근무시간(18:00)까지 인정

■ 우편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 우편봉투에 '응시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이라고 기재

♣ 보내실 곳 :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 응시취소 및 환불 담당자 앞

■ 팩스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fax 02-2251-6329)

■ 이메일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call@kuksiwon.or.kr)

* 팩스 및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tel 1544-4244)

④ 환불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2주 이내

** 환불신청 관련 유의사항 및 신청서 양식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의 [시험 정보]-[서식모음] 메뉴에서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참고

5장

자격증 교부 신청

1 신청절차



②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보내실 곳 :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 면허(자격)교부 담당자 앞

나. 유의사항

- 우편 발송 시,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배송사고를 대비하여 등기번호를 기억해둘 것을 권장함
- 하루에 수천 여 통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개인별 우편물 도착여부 확인이 불가함
- 다. 접수확인 : 국시원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마이페이지]-[면허·자격발급 진행상황]에서 진행상황을 확인

③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응시자격	필수 제출 서류
1급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언어재활기관에 3년·1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① 자격증교부 신청서 ②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③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④ 언어재활사 업무 경력증명서(국시원 서식) ⑤ 2급 재직자(본인) 재직증명서류(원천징수영수증) ⑥ 상근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⑦ 상근 언어재활사 상근증명서류(4대보험가입(직장)내역) ⑧ 상근 언어재활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⑤ 언어재활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⑩ 의사진단서 ※ 본인이 상근 언어재활사인 경우 ⑥~⑧ 생략 가능
	응시자격	필수 제출 서류
	2012년 8월 5일 이후 언어재활 관련 학과 입학하여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및 학위 취득 (단, 2015년 8월 5일 이후 입학하여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해당 전문대학 에서 12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	① 자격증교부 신청서 ② 졸업증명서 ③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④ 성적증명서 ⑤ 언어재활관찰·언어진단실습·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 ⑥ 의사진단서
2급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이후 학위 취득	① 자격증교부 신청서 ②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③ 언어재활 관련 학과 재학시기 증명서류 ④ 의사진단서
		┃① 자격증교부 신청서

1. 자격증 교부 신청서(공통)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작성 시 등기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

2. 졸업증명서(공통)

- 대학별 단체 신청의 경우에도 개인별 제출 서류를 각각 첨부
- 대학에서 보낸 공문으로는 대체 불가능
- 졸업예정증명서는 불인정(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자격증 신청 가능)

3. 언어재활사 업무 경력증명서(1급 언어재활사 해당)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다운받아 작성

4. 2급 재직자(본인) 재직증명서류(1급 언어재활사 해당)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미가입시 '급여명세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5. 상근 언어재활사 상근증명서류(1급 언어재활사 해당)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개 중 2개 이상 가입)
- 6. 상근 언어재활사 개인정보 수집동의서(1급 언어재활사 해당)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다운받아 작성
- 7.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2급 언어재활사 해당)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다운받아 작성
- 8. 성적증명서(2급 언어재활사 해당)
 - 언어재활관련 교과목이수증명서에 기재한 과목명을 반드시 형광펜으로 표시
- 9. 언어재활관찰·언어진단실습·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2급 언어재활사 해당)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다운받아 작성
- 10. 언어재활 관련 학과 재학시기 증명서류(2급 언어재활사 해당)
- 주전공자 : 입학일자 확인 가능(성적증명서 또는 학적부)
- 복수전공자 : 복수전공 승인일자 확인 가능

11. 의사진단서(공통)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의사진단서 양식 :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검사내용, 검사소견,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이 면허교부신청서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12.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

■ 사진교체 : 요구서(사진 1매 부착), 신분증 사본을 방문·우편 제출

■ 이름변경 : 개명 시, 요구서와 신분증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을 방문·우편 제출

13. 외국국적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외국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조회 제출서류를 별도로 제출 (*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필수(아포스티유 비협약국가는 영사확인 필수))

【※ 에성 차기의 에포프러뉴 글무(에포프러뉴 에법하차기는 경기력인 글무// ■ 영문의 경우 번역·공증받지 않고 원본으로 제축 가능하나 하국어 또는

■ 영문일 경우 번역·공증받지 않고 원본으로 제출 가능하나, 한국어 또는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기재된 서류는 번역·공증 후 제출하여야 함

국가	발급처	관련서류명	내용	
미국	주한미국대사관			
캐나다	주한캐나다대사관	AFFIDAVIT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건		
뉴질랜드	주한뉴질랜드 대사관		유무 범죄기록 사실유무	
대만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성명서		
중국	해당시 공증처	미수형사처분공증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일본경찰청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일본	해당시청	신분증명서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 사실 유무	

[※] 위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문의

14. 기타 제출 서류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발급 신청안내]-[직종별 신청서류] 참고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 끝